

문서번호	BSKS-3-1-07
제정일자	2009.09.01.
최종개정일자	2022.08.30.
페이지 수	1/11

2009.09.01.제정 2012.08.07.개정 2013.06.26.개정 2013.12.27.개정 2014.03.01.개정 2018.01.31.개정 2018.02.28.개정 2019.07.16.개정 2020.04.29.개정 2022.02.28.개정 2022.04.15.개정 2022.08.30.개정

소관부서 : 교무처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이하"본 대학"이라 한다.) 외국인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2.28.>
- 제2조(정의) 교원이라 함은 외국인으로서 교육목적으로 입국하여 본 대학에 소속되어 본 대학 교육과정상 교과목 또는 본 대학에서 특별히 개설하는 강좌에 대한 강의를 주된 임무로 하는 교수를 말한다.
- 제3조(자격) 교원은 다음의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별표1의2 "14호 : 교수(E-1)" 또는 27호 결혼이민(F-6)" 또는 "24호 : 거주(F-2)" 또는 "26호 : 재외동포(F-4)" 또는 별표1의3 의 "영주(F-5)로 입국자격을 가진 자<개정 2019.07.16.>
  - 2.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수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3. 체류기간이 정관에 정한 임용기간 보다 길거나, 정관의 임용기간 동안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한 자<본조개정 2013.06.26.>
- **제4조(임용방법)** 교원은 공개채용에 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과(계열)장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3.06.26., 2018.01.31., 2022.02.28., 2022.08.30.>
- 제5조(임용절차) ① 신규임용 직급은 조교수로 한다.
  - ② 임용 예정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체류자격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신규임용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문서번호	BSKS-3-1-07
제정일자	2009.09.01.
최종개정일자	2022.08.30.
페이지 수	2/11

- 1. 외국인 전임교원 임용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 2. 인사기록카드
- 3. 자필 이력서
- 4. 학력 및 성적증명서
-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6. 외국인등록증 사본, 인증사증(Visa E-1 등) 및 여권 사본 각 1부
- 7. 채용신체검사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개정 2013.06.26.>

#### **제6조(임용계약기간)** ① 교원의 임용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개정 2012.08.17.>

- ② 교원의 임용 계약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부 조항을 변경하거나, 특약으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할 수 있다.
- ③ 근무실적이 우수한 교원은 재임용 할 수 있다.
- ④ 교원이 재임용 되지 않을 때에는 임용계약기간 종료일에 당연히 퇴직한다.<개정 2013.06.26.>

제7조(강의책임의 시간) 교원의 강의 기본시간은 주 12시간으로 한다.

제8조(직무) 교원은 강의를 담당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 1. 전임교원과의 공동연구
- 2.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 3. 기타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 제9조(복무) ① 교원은 교육관계법령, 학교법인 화신학원 정관 및 부산경상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면서 성실히 복무하여야 한다.
  - ② 교원은 총장의 허가 없이 본 대학 이외의 학교ㆍ기관 등에 출강하거나 겸직 할 수 없다.
  - ③ 교원은 담당과목의 강의 및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④ 방학 중 계절학기 강의 또는 특별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⑤ 보직과 학사업무, 입시, 학과 회의 참석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한다.
  - ⑥ 교수업적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⑦ 교원이 해외여행을 할 경우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⑧ 총장은 교원의 신체상 장애 및 휴양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3.06.26.>
- 제10조(보수) ① 교원의 보수는 [별표1]의 「외국인교원 임용계약 관련 급여(연봉) 기준표」에 의하여 산정된 연봉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계약으로 정한다. 단, 기본시간 초과 시에 지급하는 초과수당은 전임교원에 준하여 지급한다<개정 2013.06.26.>
- 제11조(임용계약해지)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서번호	BSKS-3-1-07
제정일자	2009.09.01.
최종개정일자	2022.08.30.
페이지 수	3/11

- 1. 담당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담당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3.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 4. 사립학교법 제57조에 해당될 때
- 5. 교원 재임용규정의 재임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 6. 본 대학 교원으로서 대학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 7.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할 때
- 8. 기타 임용계약을 유지하기에 현저히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때
- 9. 만 65세에 도달한 때(학기 중에 도달한 때 학기 말일로 한다)<개정 2013.06.26.> **제1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재임용) ① 교원의 재임용의 절차는 본교 교원재임용규정 제5조(재임용 통보 및 신청), 제7조의2(심사방법 및 절차) ③항을 준용한다
- ②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해서는 심사대상기간의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재임용심사 기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며, 평정내용 점수의 80% 이상 취득한 교원에 대해 재임용 한다.
- 1. 교원의 재임용심사기준에 의한 심사취득점수<신설 2020.04.29.>

직 급	재임용심사기준표 합계점수	임용계약기간	심사대상기간	비고
교 수 부교수 조교수	평정내용 점수의 80% 이상	1년	계약기간	

- ③ 임면권자가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임용을 할 수 있다.
- ④ ③항에 의해 1년으로 재임용된 자는 1년을 유예기간으로 보며, 재임용 유예기간 중 재임용 심사기준표합계점수가 80% 미만인 경우 재임용 부적격자로 선정하여 당연퇴직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고등교육법 제18조 ②항 개정(2011.07.21.),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8845(2011.11.17.)호에 의거하여 2011년 12월 1일부터 "부산경상대학"을 "부산경상대학 교"로 한다.

부 칙



문서번호	BSKS-3-1-07
제정일자	2009.09.01.
최종개정일자	2022.08.30.
페이지 수	4/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명 변경) 이 규정의 명칭을 외국인전임교원 인사규정에서 외국인교원 인사규정으로 변경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2020.09.25.)에 의하여 『교학처』를 『교무처』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문서번호	BSKS-3-1-07
제정일자	2009.09.01.
최종개정일자	2022.08.30.
페이지 수	5/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2022.04.15.)에 의하여 『학생산학취업처』를 『산학처』로,『기획처』를 『기획실』로,『입학홍보처』를 『입시홍보실』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23일부터 소급시행한다.



문서번호	BSKS-3-1-07
제정일자	2009.09.01.
최종개정일자	2022.08.30.
페이지 수	6/11

[별표 1] <개정 2013.06.26.,2013.12.27.,2019.07.16.>

#### 외국인교원 임용계약 관련 급여(연봉) 기준표

#### ◇ 전임교원

(단위: 처워)

구분	구분	기본급(월)	연구비(월)	주택보조비(월)	합계(월)	비고
	1년차	1,800	300	300	2,400	
	2년차	1,800	300	300	2,400	
	3년차	1,900	300	300	2,500	
영어권	4년차	1,900	300	300	2,500	
장이전	5년차	2,000	300	300	2,600	
	6년차	2,000	300	300	2,600	
	7년차	2,100	300	300	2,700	
	8년차	2,100	300	300	2,700	
	1년차	1,700	300	300	2,300	
	2년차	1,700	300	300	2,300	
영어권	3년차	1,800	300	300	2,400	
外	4년차	1,800	300	300	2,400	
	5년차	1,900	300	300	2,500	
	6년차	1,900	300	300	2,500	

※ <삭제 2019.07.16.>

※ 단, 외국인교원 중 교과지도 능력이 뛰어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외국인 중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연차 경과 후에도 연봉상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 ◇ 시간강사(E-2)

(단위: 천원)

구분	기본급(월)	연구비(월)	주택보조비(월)	합계(월)	비고
최초임용시	1,300	_	300	1,600	1년 미만에 한함

#### ◇ 임용 계약에 따른 조건

- 1. 계약은 매 1년 단위로 체결하며, 급여는 매월 교직원 급여 지급시 지급한다.
- 2. 주당 기준시수는 12시간으로 한다.
- 3. 초과 강의수당은 시간당 10,000원으로 하고, 방과 전·후와 하·동계방학 중 특강은 특강계획에 의거 수당을 지급한다.
- 4. 하・동계 방학중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9.07.16.>
- 5. 기타 임용계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계약서에 정한다.



문서번호	BSKS-3-1-07
제정일자	2009.09.01.
최종개정일자	2022.08.30.
페이지 수	7/11

[별지 제1호 서식]

## 부산경상대학교 외국인교원 고용계약서

부산경상대학교 외국인교원의 고용과 보수에 관한 규정을 집행하는 釜山經商大學校總長을 "甲"이라 하고 상기 계약자 \*\*\*\*\*\*를 "乙"이라 칭하여 아래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기간) 고용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이다(1년).

제 2 조 ("乙"의 의무) 주당 기본강의 시간수는 12시간이며, 복무 규정은 본 대학 전임교원과 동일하고 관광일어과 학과장의 감독을 받는다.

제 3 조 (월 보수 지급방법)

- 1. 월 보수는 \*\*\*\*\*\*원+\*\*\*\*\*원(연구보조비)으로 한다.
- 2. 기본 월 보수는 부산경상대학의 보수 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 3. 주당 기본시간수(12시간)를 초과하는 강의 수당은 부산경상대학교 전임교원 초과강의료에 따른다
  - 4. 관광일어과와 관련된 각종행사 참여 및 보조에는 무료로 한다.
  - 5. 각종 보수로 인한 세액 공제는 "乙"이 부담한다.
  - 6. 숙소는 2인 공용 주택 혹은 주택보조비 월300,000원을 지급한다.
  - 7. 하・동계 방학중 각각 3~4주간의 휴가.

제 4 조 (계약의 해지) "甲"은 "乙"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임용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본 계약을 해지한다.

- 1. 신체상의 이상으로 강의를 계속할 수 없을 때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缺格事由)에 해당될 때
- 3. 계약상의 의무 및 복무 규정을 위반했을 때

제5조 이 계약서에 명기한 사항에 대해 어떤 의문이 있을 경우나 계약서에 삭제 및 첨가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甲"과 "乙"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조정이 불가능 할 경우 "甲"의 의견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甲 釜山經商大學校總長

Z \*\*\*\*\*

0 0 0



문서번호	BSKS-3-1-07
제정일자	2009.09.01.
최종개정일자	2022.08.30.
페이지 수	8/11

# 부산경상대학교 외국인 전임교원 고용계약서 BUSAN KYUNGSANG COLLEGE CONTRACT OF EMPLOYMENT FOR FOREIGN FACULTY

성 명 NAME IN FULL: \* \* \* \* \* \*

출생일자 DATE OF BIRTH: \* \* \* \*, 19 \* \*

국 적 NATIONALITY : \* \* \* \*

여권번호 PASSPORT NUMBER: \* \* \* \* \*

부산경상대학교 외국인 객원교수의 고용과 보수에 관한 규정을 집행하는 부산경상대학교 총장(이하 "A"라 한다)과 상기 계약자(이하 "B"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Busan Kyungsang College governing employment and compensation of visiting foreign professors, Busan Kyungsang College (BKC), represented by the president executing this contract (hereafter to be referred to as "A") and the contractor named above (hereafter referred to as "B") agree as follows

제1조 ("B"의 자격) 직위는 전임교원이다.

Article 1 (Status of "B") The status of "B" at \* \* shall be that of a full-time teacher.

**제2조 (계약기간)** 고용계약기간은 20 \* \*년 \* \*월 \* \*일부터 20 \* \*년 \* \*월 \* \*일까지로 한다(1년).

Article 2 (Contract period) The contract period shall be from \*\*. \*\*, 20 \*\* to \*\*. \*\*, 20 \*\*.

- 제3조 ("B"의 의무) 부산경상대학교에서의 "B"의 주임무는 \* \* \* \* 과 학과장의 감독 하에 강의 및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규교과 외 업무에도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1. 주당 책임 강의시수는 12시간 이상으로 하되, 학과담당 주당시수가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부족시수 이상을 부산경상대학교의 타 학과 또는 기관의 강의를 담당하여야 한다.
  - 2. 부산경상대학교 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교수다운 외양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적 관습의 차이에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
-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B") Major responsibilities of "B" at BKC shall be teaching and research under the control of the Chairperson of the \* \* Administration Department.

  In addition, "B"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extracurricular activities of the department.
  - 1. "B"'s teaching load shall be 12 hours or more per week. In case "B" does not teach 12 hours per week in the department, "B" may be required to teach at another department or institute of BKC up to the contracted 12 hours or more.
  - 2. In work-related situations, "B" shall behave in a manner that befits a BKC professor. "B" shall maintain a professional appearance. "B" shall strive to be sensitive to cross-cultural differences.



문서번호	BSKS-3-1-07
제정일자	2009.09.01.
최종개정일자	2022.08.30.
페이지 수	9/11

#### 제4조 (보수)

- 1. 계약기간의 1년간 매월 보수는 한화1.800.000원+300.000원(연구비)으로 한다.
- 2. 기본 월 보수는 부산경상대학교의 보수 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 3. 주당 12시간을 초과한 시수에 대하여 부산경상대학교 초과 강의료 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초과 강의료를 지급한다.
- 4.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B"는 초과 지급분을 환불하고 "A"는 미지급분을 지급한다.
- 5. 세금은 대한민국 조세법에 따라 보수에서 공제한다.

#### Article 4 (Compensation)

- 1. "B" shall be paid a monthly base salary of \#1,800,000 and research stipend \#300,000 in Korean currency for 12 consecutive months during the contract period.
- 2. The monthly base salary shall be paid on BKC's regular pay day, the 25th of each month.
- 3. If "B" teaches more than 12 hours per week of BKC's regular courses, "B" shall be compensat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nd regulations governing over-time teaching payment.
- 4. In the case the contract is not completed, a prorated payment shall be made by "A" to "B" in case of underpayment, or by "B" to "A", in case of overpayment.
- 5. Tax shall be deducted from "B"'s pay according to the taxation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 제5조 (숙소) "B"는 2인용 아파트를 제공받거나, 또는 주택보조비로 매월 한화 300,000원을 제공받는다.
- **Article 5 (Housing)** "B" shall be provided with an apartment to be shared with others, or paid housing allowance (\overline{\pi}300,000 monthly).
- 제6조 (휴가) "B"는 여름 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연간 8주의 유료 휴가를 제공받는다.
- **Article 6 (Vacation)** "B" shall be provided with a four-week paid vacation during the summer and winter, totaling 8 weeks a year.
- 제7조 (건강보험) "B"는 대한민국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며, 보험료는 계약기간 매달 "B"의 보수에서 공제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 Article 7 (Health insurance) "B" must jo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lan of the Republic of Korea. Insurance fees will be deducted from "B"'s regular pay each month during the contract period. For an increased fee, "B" may add legal dependants to "B"'s Health Insurance Plan.
- **제8조 (연금)** "B"는 계약기간 동안 대한민국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의거 사학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B"는 대한민국 사학연금 관련 법규에 따라 사학연금을 받을 수 있다.
- **Article 8 (Pension)** "B" must join the Private School Personnel Pension, based on Article 3 of the Private School Personnel Pens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contract period. "B" shall receive a pension according to the pension related laws of Korea.



문서번호	BSKS-3-1-07
제정일자	2009.09.01.
최종개정일자	2022.08.30.
페이지 수	10/11

제9조 (외부강의) "B"는 "A"의 허가 없이 계약기간 동안 유료 외부강의를 할 수 없다.

**Article 9 (Outside Teaching)** Unless authorized by "A", paid off-campus teaching is not permitted during the contract period.

**제10조 (계약의 해지)** "A"는 "B"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이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2. "B" 또는 동반가족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 3. 계약서에 명시된 책임을 위반하거나 복무규정을 위반했을 때

**Article 10 (Termination of Contract)** "A" may terminate the contract under the circumstances specified below.

- 1. If "B" has difficulty in performing "B" s duties on account of physical or mental disorders.
- 2. If "B" or his dependents violate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 3. If "B" neglects any of the responsibilities stipulated in this contract or violates the BKC's Service Regulations.

제11조 (기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A"와 "B"가 상호협의 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B"는 "A"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Article 11 (Other Matters) If a contract-related conflict arises between "A" and "B" regarding matters not explicitly stipulated in this contract, they shall be resolved through mutual agreement. If the conciliation fails, "B" shall accept "A" s interpretation.

본 계약의 증거로 2부를 작성하여 "A"와 "B"는 각각 1부를 보관한다.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HAVE MADE THIS CONTRACT IN DUPLICATE; "A" SHALL RETAIN ONE COPY AND "B" SHALL RETAIN ONE COPY OF THE ORIGINAL.

20 \* \* . \* \* . \* \*

President Visiting Professor

Busan Kyungsang College

Date: \* \* Date: \* \* , 20 \* \*



문서번호	BSKS-3-1-07
제정일자	2009.09.01.
최종개정일자	2022.08.30.
페이지 수	11/11

[별지 제2호 서식] 재임용심사기준표(외국인교원) <신설 2020.04.29.>

구분 번호	평정항목	평정내용(방법)			평정기준		
1	학생에 대한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70)	•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능력부족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학사일정(수업) 등에 지장을 초래하여 학내 면학 분위기 훼손(10)		수 업 결 손	A B C D E	4주이상 2주이상 3주미만 1주이상 2주미만 1주미만 없음	0 4 6 8 10
		• 재학생들이 평가하는 강의평가 평균점수(40)		점 수	• 65점 미만 • 65점 이상 75점 미만 • 75절 이상 85점 미만		20 25 30 35 40
		<ul><li>소속</li><li>학과 평가</li></ul>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실적 (횟수당 2점) (10) (오후능력프로그램, 동아리 지도 등)	점 수	• 참여실적(횟수당 X2점, 최대10점)		0~10
		(15)	• 학과 업무 평가(5) (학생지도 등)	점 수	미흡 보통 우수		0 3 5
		• 행정부서 (행정부처별	평가(5) 정량적 정성평가)	점 수	미흡 보통 우수		0 3 5
소	·계(70)						
		• 교육관계 법령 준수 여부		• 정 • 감 • 견	직 봉	·)	-20 -15 -10 -5 -2
법령 9 준수여 <sup>1</sup> 고원으로 품위 유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여부와	• 학내활동		• ই	의 무단	· 무단불참(회당) ·불참(회당) ·불참(회당)	-2 -2 -2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사항(30)	• 교육 기본 의무 위반		• 연구교육, 지도, 산학협력 등의 불이행으로 교육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회당)		-3	
		• 학칙 및 규정 위반		• 학칙 및 규정 위반(회당)		-3	
		• 교원으로서 품위 유지 여부					
소	:계(30)	최대감점 -	30점 / 감점 없을 때 30점				
합	계(100)						